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04호)

제안 설명



2020. 4. 2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장 인 홍
(더불어민주당 구로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위원)

□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장인홍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무국외여행의 추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시 사전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당연직 위원 1명을 제외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